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근거 마련〉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0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근거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	2
※ 참고자료	6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장비 도입 지원사업’ 추진현황	6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예산(중기부) 현황	7
3.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법」(제정법안) 개요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8.
3. 회부연월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도 에너지의 생산·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자금·전문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근거 신설

(안 제4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2조의2(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전반에서 에너지의 생산·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장비의 도입 등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사업 활동에 있어 에너지의 생산·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문제가 글로벌 핵심 경제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는 2023년에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산업부문에서 총 11.4%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업부문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로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 등의 기반이 부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탄소중립 전환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이 62.5%, 정보 및 지식 부족이 23.7% 등이 꼽히고 있음¹⁾.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²⁾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에너지의 생산 또는 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³⁾는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1)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11)에서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기업의 58.7%가 자금·인력 부족을 선택함.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23.5, p96

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나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중견기업에 비해 개별 기업 단위의 탄소배출량이 적고, 탄소중립 대응에 필요한 자본·정보·인력 등이 부족하여 기존 제도적 틀 내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후위기 대응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제정법률안 4건⁴⁾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률안들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될 필요도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EU에서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⁵⁾, 공급망실사 등 국내·외 원청기업의 공급망 내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제2205854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제2206170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제2209341호)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제2210605호)

5)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 기업들이 강한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탄소 비용이 없는 외국 제품이 EU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임.

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향후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동 법의 개정안 규정을 제정법률에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장비 도입 지원사업’ 추진현황

□ 중기부 소관 탄소중립 관련 설비·장비 도입 지원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중소기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 추진중

* 탄소감축 설비투자, 설비도입·운전자금, 사업전환자금 지원 등

- 또한, 대부분 지원사업이 탄소중립 단독 지원사업이 아닌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내역사업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종료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설비·장비 도입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

순번	내역사업명	회계	근거 법령	’23	’24	’25	’26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기후기금	탄소중립기본법	54	138	140	191
2	제조혁신 기반 구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일반회계	스마트제조혁신법	30	30	50	-
3	Net-Zero 유망기업자금	중진기금	중소기업진흥법	462	967	938	938
4	사업전환자금 (탄소중립 용자)	중진기금	중소기업진흥법, 사업전환특별법	400	500	550	500
합계 (억원)				946	1,635	1,678	1,629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예산(중기부) 현황

- '26년 컨설팅, 설비, 사업화, 금융투자, 기반조성, 인식제고, R&D 등 7개 영역에서 총 2,552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내역사업명	회계	'23년	'24년	'25년	'26년
I. 진단·컨설팅		-	24	74	29
CBAM 대응 인프라구축	기후	-	24	44	10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기후	-	-	30	19
II. 설비		84	168	190	191
탄소중립 설비투자	기후	54	138	140	191
제조혁신 기반 구축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일반	30	30	50	-
III. 사업화		273	198	231	163
혁신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일반	118	118	118	118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화)	기후	152	77	80	-
탄소중립 사업화	기후	-	-	30	45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탄소중립)	일반	3	3	3	-
IV. 금융투자		862	1,467	1,588	1,538
Net-Zero 유망기업자금	중진	462	967	938	938
사업전환자금 (탄소중립 융자)	중진	400	500	550	500
모태펀드 출자 (기후테크 펀드)	중진	-	-	100	100
V. 기반조성		713	356	279	318
규제자유특구 (저탄소 모빌리티, 수소 등)	지특	504	221	144	93
그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그린 스타트업 타운)	일반	209	135	135	225
VI. 인식제고		430	242	242	263
연수사업 (전체)	중진	427	239	238	259
ASEIC 운영 (에코이노베이션 컨설팅)	일반	3	3	4	4
VII. R&D		260	99	45	50
Net-Zero 기술혁신개발	기후	103	58	26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R&D)	기후	157	41	19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예타)	일반	-	-	-	50
합계 (단위 : 억원)		2,622	2,554	2,649	2,552

* '25년부터 탄소중립 관련 보장은 기후부에서 통합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속 지원

- **(목적)**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역량 확보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章 구분	條文 내용
1.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제7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심의·조정
2.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체계 (제8조~제12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 및 촉진센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기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
3.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제13조~제14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거래 등
4.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제15조~제23조)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투자,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설비 도입·개선 지원 등), 세제, 산업단지, 시급업종,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및 전문기업 육성,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탄소감축가치평가,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5.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등 (제24조~제30조)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 특례, 투자, 부담금, 규제 처리 및 관리·감독
6. 보칙 (제31조~제35조)	수수료, 청문, 보고 및 검사, 권한 위임·위탁, 공무원 의제
7. 벌칙 (제36조~제38조)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 **(입법 경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체계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법안(4개) 의원 발의·논의 중**

* 나경원('24.11월), 강훈식(24.12월), 박지혜('25.3월), 김정호('25.5월) 의원 대표발의

** 산중위 법안소위 안건 논의(제정법안 조문 1회독, '25.11.20)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민간 인증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인증·거래할 수 있는 제도·인프라 구축
 - 우수 민간 인증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 제시 등 신뢰도·투명성 높은 인증·거래 관리체계* 구축 등

* (중기부) 탄소센터 설치 → (탄소센터) 인증 가이드라인 제시 및 민간 인증기관 공모·지정 →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사업수행 → (민간 인증기관) 검토 및 인증 발급요청 → (탄소센터) 인증 승인

-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지원)** 설비도입, 금융·투자 등 탄소중립 촉진 지원, 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확산, 탄소감축 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등